

「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광성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11. 13.
- 회부일자 : 2025. 11. 18.
- 상정일자 : 2025. 11. 25.

2. 제안이유

-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·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·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대상(안 제4조)
- 지원사업(안 제6조)
- 홍보(안 제9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규정하고 있으며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군수의 책무)에서 다자녀가정의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4조(지원대상)에서 지원대상을, 안 제6조(지원사업)에서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- 안 제8조(중단 및 회수)에서 지원 중단 및 환수를, 안 제9조(홍보)에서 지원 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자녀로 명시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,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므로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대한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~ 차. (생략)
3. ~ 7. (생략)